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2일, 박희승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2024.11.21.) 상정, 제안설명, 축조
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직접 회부(2024.9.24.)

제1차 안전조정위원회(2024.11.21.)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
(대안반영 폐기)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
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박희승의원)

쌀은 대한민국 식량안보를 지탱하는 국민의 주식으로 전체 농가 중
쌀 생산 농가의 비중이 절반 이상에 달하는 우리 농업의 주요 품목으

로 농가의 생산기반과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하나의 축임.

그러나 최근 쌀값이 45년 만의 최대치로 폭락하고 2022년 농업소득은 전년(1,296만원) 대비 26.8%가 폭락한 948만원에 그쳐 쌀소득이 20여년 전 수준으로 후퇴하는 등 쌀값 폭락으로 인한 농민의 고통이 컸음.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1호 거부권 행사로 인해 시장격리 등 여러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0월 이후 쌀값은 몇 개월째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실제 올해 8월 25일 기준, 쌀값은 17만 6천원대까지 하락해 2022년 최악의 쌀값 폭락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임시방편적 처방이 아닌 근본적인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양곡관리법의 목적에 생산자의 이익 보호와 양곡의 적정한 가격 유지를 명시하고,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포함하며, 비축·운용에 필요한 비용은 양특회계에서 지출하도록 하여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며, 논타작물재배지원 사업, 의무수입쌀의 국내 시장 영향을 최소화하는 등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지방소멸을 완화하는 동시에 식량안보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없음(소위원회 직접 회부)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안전조정위원회 심사내용

(안전조정위원회 위원장 주철현)

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 조정안으로 의결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7.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8.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